

신주발행공고(정정)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는 2023 년 06 월 30 일, 2023 년 08 월 25 일 개최한 (정정)이사회결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관하여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5,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기준)
2. 자금조달의 목적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등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 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 \text{ 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 [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 (2) 2 차 발행가액은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발행회사의 주가에 대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으로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 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 \text{ 차 발행가액} = \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

- (3) 확정 발행가액은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5 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text{Max}\{\text{Min}[1 \text{ 차 발행가액}, 2 \text{ 차 발행가액}], \text{기준주가의 } 60\%\}$

5. 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08월 07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8월 0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 주당 0.5062981566 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 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 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 주당 0.2 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3)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 (이하"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2 항 7 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 50,000 주 이하(액면가 500 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7.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 2023 년 09 월 14 일 ~ 2023 년 09 월 15 일(2 일간)
- (2) 일반공모 청약기간: 2023 년 09 월 19 일 ~ 2023 년 09 월 20 일(2 일간)

8. 청약주식의 단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 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1 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 주당 0.2 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 주 미만은 절사)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2)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 주, 최소 청약수량을 100 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0 주 이상	1,000 주 이하	100 주 단위
1,000 주 초과	5,000 주 이하	500 주 단위
5,000 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 주 단위
10,000 주 초과	50,000 주 이하	5,000 주 단위
50,000 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 주 단위
100,000 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 주 단위
500,000 주 초과	1,000,000 주 이하	100,000 주 단위
1,000,000 주 초과	5,000,000 주 이하	500,000 주 단위
5,000,000 주 초과	10,000,000 주 이하	1,000,000 주 단위
10,000,000 주 초과		5,000,000 주 단위

9. 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 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3)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만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 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20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 9 조 제 10 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 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1.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지점
12.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공모 청약 후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별 배정주식수는 2023년 09월 21일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한다.
13. 환불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3년 09월 22일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한다.
14. 주금 납입기일 : 2023년 09월 22일(예정)
15. 신주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16. 대표주관회사 : SK증권㈜(인수비율: 70.0%)
17. 인수회사 : (주)상상인증권(인수비율: 30.0%)
18. 모집주선회사 : 케이프투자증권㈜
19.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남동중견기업센터
20.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9 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함.
-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할 예정임.
-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3년 08월 30일 ~ 2023년 09월 05일(5영업일간)
-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됨.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됨.
-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회사 : SK증권㈜
21. 신주 상장예정일 : 2023년 10월 11일
22. 기타사항
-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3년 08월 08일부터 2023년 08월 11일까지로 함.
-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음.
- (5)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2023 년 08 월 28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87 번길 16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구관영